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경험과 대응 전략에 있어 공적 보호의 한계와 에스닉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연구논문을 잘 읽었으며, 권리보호제도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이주노동자 산재의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현실과 산재 피해 사례, 피해 구제에 있어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는 부분은 연구논문에 잘 담겨져 있어 재언급은 하지 않겠으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의 실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첫째는 저임금일 것이며, 두 번째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투입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노동유연화를 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값싸고 위험한 그리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재는 운명적으로 피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통계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정주노동자에 비해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3배가 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죽으러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외치는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노동을 시작할 때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권리 교육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라는 호명을 받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이라 법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채찍과 단속의 두려움으로 노출을 꺼리는 심리까지 섞여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는 개인의 부담이며, 치료를 놓쳐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나마 일하다 다치면 산재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는 위험한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 기업의 노력, 둘째, 위험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넣는 ‘위험의 이주화’ 방지 정책, 세 번째는 이주노동자 산재 적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의 각국어로 된 홍보의 노력이 절실, 마지막으로 산재 은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하게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등록의 경우 산재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 대한 미납 보험금 징수를 경감하고, 출입국통보를 면제하여 범칙금 예외 조치하는 것 (이러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산재 신청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함)

2.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민족공동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도시나 밀집형 공단에서는 그나마 산재를 비롯한 정보들이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종교시설, 커뮤니티, 식당 등을 통해 교환될 수 있으나, 소도시 또는 농촌으로 가면 이러한 정보의 네트워크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소외됩니다. 물론 갈수록 SNS를 통한 정보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도 함께 존재하는 한계도 있

습니다. 게다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그나마도 자기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활발한 쌍방 소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닉 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통이 가능한 가장 일차적인 관계망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망이 갖는 집단적인 사회적 영향력이나 힘이 미미하고, 정보의 축적 정도가 미미하거나 편차들까지 있으며, 결정적으로는 정보의 신뢰성도 의문입니다. 이는, 주변의 산재 처리 경험도 성공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왜곡된 경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보와 지지자를 만나는 것은 연구자가 논문에서 표현하듯이 ‘운’입니다.

끝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서도 부딪히게 되는 ▲ 산재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 ▲ 회사의 방해를 뚫고 산재 신청하는 것의 어려움, ▲ 산재 신청했더라도 산재 기간 중에 회사가 업무 강요, ▲ 사고성 재해는 그나마 산재 접근성이 있으나 업무상 재해를 산재로 입증받기 어려움 ▲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산재 신청시 겪게 되는 단속의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닉 공동체가 갖는 장점은 장점대로 충분히 살리는 것과 함께, 이주단체, 노동단체들과의 연계 속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에 접근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의 보강과 정부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